



1. 발수시 근관확대를 행할 경우 진료비 산정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발수시에도 근관확대를 산정할 수 있으며 근관확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회 실시하여도 1차아당 2회만 인정됩니다.

2. 즉일충전 처치시 약제료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 즉일충전 처치시 치수복조비용, 특정약제료, 와동형성료는 포함되지만 충전료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마취를 한 경우에는 마취료 및 마취약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치수절단과 충전을 당일에 하고 치수절단료 및 즉일 충전처치료를 산정하였으나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답】 치수절단과 충전을 1일에 시행하였을 경우는 치수절단료 및 즉일 충전처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치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술식을 일률적 혹은 많이 산정할 경우는 조정이 됩니다. 치수절단 당일에 충전하는 방법은 보험에서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타 의료기관에서 치수염치료 중 내원하여 근관충전을 하였습니다.

청구시 인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합니다.

【답】 발수와 근관치료가 없는 근관충전은 보

통 처치료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타 의료 기관에서 치료 중 내원하여 근충하였을 경우는 명세서 우란에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십시오.

5. 근관치료 후 충전재료로 인산세멘을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 인산세멘으로 충전할 경우 베이스세멘으로 사용한 경우는 산정할 수 없으나 영구충전으로(아말감 충전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한 경우는 충전료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6. 상악대구치에서 Oblique ridge를 넘지 않은 O와동과 LO와동이 있을 경우의 와동 면 산정 방법을 질의합니다.

【답】 현재 와동면 산정 방법에서 Oblique ridge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O and LO와동인 경우는 1와동 2면으로 산정되며 O and L와동인 경우는 2와동 2면으로 산정됩니다.

7. 치아재이식술 시행시 근관치료 비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 치아재이식술시에 발수, 근치, 근충을 동시에 시행하여도 근간치료비를 산정 할 수 없습니다.

8. 아말감충전시 청구하였을 경우 편측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답】 아말감충전을 1일에 좌우측을 동시에

산정한 경우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 관계로 같은 날에 편측 상하악 치아 충전은 가능하나 좌우측은 어렵다고 하니 가급적 같은 날에 동시에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아밀감 충전을 한 후 탈락되어 재충전을 할 때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 충전후 1개월 이내에 탈락한 경우는 즉 치료를 산정할 수 없고 충전료 50% 아밀감재료대 10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경과시는 100% 산정할 수 있습니다.

10. Rubber dam을 사용하여 청구시 삭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Rubber dam 사용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 Rubber dam 장착은 청구치의 발수, 근치, 근총, 치수절단 등의 치수치료와 즉처시에 유치에서는 치수절단, 즉처, 충전시에 인정됩니다.

11. 근관치료 중 환자가 내원하지 않고 있다가 1개월이 지나서 다시 통통으로 내원한 경우 초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 치아 경조직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다가 중지된 상태에서 동일질환으로 1개월 이상 지난 후 내원한 경우는 재진료로 산정됩니다. 대체로 동일치아, 동일 병명인 경우 초진 후 약 6개월까지는 재진료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치아라도 병명이 다른 경우는 초진료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2. 상악구치부의 Oblique ridge 양측의 교합면에 각각 2개의 와동이 있을 경우의 산정방법을 질의합니다.

【답】 동일면상에 여러 개의 별개 와동이 있어도 1와동 1면으로 산정됩니다.

13. Amalgam이나 Inlay등 충전물을 제거하여도 수가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에서

Amalgam이나 SP Crown제거는 간단으로 Casting Crown이나 2면 이상인 Inlay 또는 근간내 이물제거는 복잡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인산세멘으로 충전한 경우는 제거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14. 구치부에 복합레진을 충전하고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답】 구치부에 즉처 치수절단 혹은 근관치료 후 복합레진을 충전한 경우 인정여부에 관하여 80년 7월 11일 심사위원회에서 아밀감은 전처 구치부에 복합레진은 전처부에만 인정하였으며 86년 12월 18일 치과분과위원회에서는 구치부에 일률적 충전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아밀감 재료대 인하 후 복합레진 충전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MO, DO, MOD로 청구하는 경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구치부는 아밀감 충전을 권하고 있습니다.

15. 진료비 명세서는 1와 1면, 2와 2면 등으로 기재하여도 되지만 Chart에는 O.MO등으로 충전와동을 기재하여야 인정됩니다.

16. 치수절단시 기존아밀감의 제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간단으로 산정합니다.

17. 근관치료기간이 길다고 조정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까지 허용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통상 의료보험에서는 근치를 7회정도 이내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진료기간을 요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세서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18. 와동형성료가 신설되었으며 보통처치, 치수복조, 충전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처치 후 충전을 시행한 경우는 와동형성료를 2회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 와동형성료는 즉처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치아당 1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19. 보통처치를 하였을 경우 약가가 처치료보다 높게 나옵니다. 약가산정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답】 약가가 처치료보다 높아도 처치료에 약가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서 보통처치료 280원만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제공 : 치과의료보험 연구회〉

# 신일치과기공소

代表 孫 永 受

서울시 중구 봉래동1가 83번지 (광풍빌딩 601호) ☎ 756-2875 · 2876  
773-3949

## ORIENTAL BRACKET

design : 이 동 주

제작 : 日本 Tomy社

판매처 : 광명치과재료상사

straight-wire appliance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백인기준의 bracket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이에 한국인의 치열궁 및 치아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제작된 pretorqued bracket이며, 치아이동의 촉진을 위한 mini-size로 제작하였다.